

미44공병대부지군부대주둔반대결의안

의안번호	223
의결 년월일	93. 12. 7 (제25회)

제출년월일 : 1993. 12. 7

제안자 : 장명진의원외 31인

1. 제안이유

- 오정동 소재 미군부대 부지는 시가화 지역으로 지역여건상 주민이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위치로서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임.
- 미군부대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토지이용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은 증만하였으며,
- 시의회는 시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제15회, 제21회 등 의회회기 시 3명의 의원발의에 의거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던 사항임.
- 작금에 군부대 계속주둔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군부대 주둔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시민을 위해 제점토되어야 함.

2. 주요골자

- 오정동 144번지 2의 일대 100,500평은 미군부대에서 계속 사용 중 군부대 이전 계획에 따라 군부대 부지로 사용목적 상실되므로 시민을 위한 토지로 이용되어야 함.
- 도시기본계획상 당해 토지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부지로 기 사용 결정됨.

도시기본계획 승인 _____ 건설부(92. 10. 24)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고 _____ 부천시 공고 93-55(93. 3. 16)
- 현재 군부대 계속 주둔을 위해 50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은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 당초 계획대로 시민을 위한 시설부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

미44 공병대부지군부대주둔반대결의문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숙원사항 해결과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미군부대 부지에 군부대 주둔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당해 토지가 도시기본계획상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결정된바, 어떠한 경우라도 군부대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을 결의한다.

하나. 부천시민의 오랜 숙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현 중설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군부대 주둔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민의 권익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문화시설로 이용되도록 시민의 뜻을 존중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부천시민의 뜻인 미44공병대 부지에 군부대 주둔 저지를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1993. 12. 7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